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p>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p>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p> <p>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p> <p>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p> <p>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p>	<p>1) 지급액</p> <p>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p> <p>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p> <p>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p> <p>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p> <p>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p> <p>2) 가산금</p> <p>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p> <p>(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p>

		<p>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p>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p> <p>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p>2. 의료 업무 등의 수당</p>	<p>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p>	<p>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p>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p> <p>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p>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 및 연구 분야	3. 연구 업 무 수 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 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p>(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p>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p>	<p>(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p> <p>(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p>											
<p>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p>	<table border="1" data-bbox="868 1144 1366 1496"> <tr> <td data-bbox="868 1144 1046 1272"></td> <td data-bbox="1046 1144 1203 1272">5년 이상</td> <td data-bbox="1203 1144 1366 1272">5년 미만</td> </tr> <tr> <td data-bbox="868 1272 1046 1384">장학관·교육연구원</td> <td data-bbox="1046 1272 1203 1384">월 22,000원</td> <td data-bbox="1203 1272 1366 1384">월 37,000원</td> </tr> <tr> <td data-bbox="868 1384 1046 1496">장학사·교육연구사</td> <td data-bbox="1046 1384 1203 1496">월 17,000원</td> <td data-bbox="1203 1384 1366 1496">월 32,000원</td> </tr> </table> <p>(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원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p>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육연구원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육연구원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원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631,700원	313,400원
			지방소방경	505,300원	279,100원
			지방소방위	404,200원	217,800원
			지방소방장	323,400원	196,000원
			지방소방교	258,600원	184,200원
			지방소방사	205,9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1)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2)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3)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함정 근무수 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 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p>1) 지급액</p> <p>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 하</p> <p>나) 6급: 월 32,000원</p> <p>다) 7급: 월 25,000원 이하</p> <p>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p> <p>2) 지급방법</p> <p>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 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 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p>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 공무원	(지급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계급</th> <th>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지방소방령 이상</td> <td>65,000원</td> </tr> <tr> <td>지방소방경</td> <td>50,000원</td> </tr> <tr> <td>지방소방위</td> <td>37,000원</td> </tr> <tr> <td>지방소방장</td> <td>34,000원</td> </tr> <tr> <td>지방소방교</td> <td>30,000원</td> </tr> <tr> <td>지방소방사</td> <td>21,000원</td> </tr> </tbody> </table>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65,000원	지방소방경	50,000원	지방소방위	37,000원	지방소방장	34,000원	지방소방교	30,000원	지방소방사	21,000원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65,000원																
지방소방경	50,000원																
지방소방위	37,000원																
지방소방장	34,000원																
지방소방교	30,000원																
지방소방사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 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 여 지급한다.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 수당	<p>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 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 보선·철도토목·철도건 축·전기통신·신호·보 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p>	<p>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p> <p>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p> <p>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p> <p>4) 일반직 9급: 월 34,000원</p>														

<p>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이하</p>
<p>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p> <p>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p>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			

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 직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 2) 4급: 월 100,000원 이하
- 3) 5급: 월 80,000원 이하
- 4) 6급: 월 60,000원 이하
-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p>지급한다.</p> <p>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p>	<p>(지급액)</p> <p>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p>
	<p>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 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p>	<p>월 50,000원 이하</p>
	<p>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p>	<p>월 30,000원 이하</p>
12. 우수 대민 공	<p>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p>	<p>1) 지급액: 월 200,000원</p> <p>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p>

무 원 수당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